

스프레이건의 意匠權是非

— 一 · 二審까지 5年걸려 上告 —

우리生活周邊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프레이건 즉 噴霧器 또는 噴霧銃으로 알려진 商品은 意匠權으로 登錄된지가 꽤 오래되었다.

그 意匠權者는 美폴로리더會社이며 自國은 물론 日本등에도 1962년에 出願하여 65년에 意匠登錄이 되었다. 그후 日本의 캐년會社가 日本國內에서 이와 비슷한 製品을 生産販賣하기 시작했다.

이때 폴로리더는 캐년을 걸어 意匠權侵害訴訟을 提起하였다. 이 意匠權侵害行爲禁止請求 內容인즉

1. 캐년은 別表 Y圖의 의장에 관련된 분무기분구를 製造販賣해서는 안된다.
2. 이 분무기분사구가 달린 분무기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3. 保管하고 있는 분무기분사구를 廢棄하라는 등이었다.

또 폴로리더의 提訴理由는 別表 X圖인 自社意匠의 特徵이 부피가 두꺼운 彈頭狀本體를 基本部分으로 하고 이 本體의 垂直方向을 基準으로 한다는 등의 內容을 說明指摘하면서 이 모두가 Y圖의 스프레이건形狀에 갖추어져 있다고 主張했다. 다시 말해서 視覺上 가장 印象이 깊은 基本的形態가 극히 共通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캐년은 X圖의 의장은 얇은 개구리形狀인데 反해 Y圖는 流線形狀自動車보더形의 前面을 切斷한 것이라는 등을 들어 反論하였다. 또 X圖의 의장은 登錄出願時에는 이미 公知되어 있었다고 主張하였다.

그 根據인즉 X圖의 의장이 美國人 트레시 부록스가 個人出願登錄한 權利를 1968년에 폴로리더가 買受하였으나 그보다 먼저인 61년에 트레시가 벨지움에 手動液體噴射裝置에 관한 特許를 출願하였다. 이 特許明細書에 X圖의 의장과 비슷한 形상의 스프레이건이 記載되어 있었으므로 同明細書는 62年 4月 16日부터 벨지움商工業所有權局圖書館에서 公衆에 閱覽시켰고 日本에의 의장등록출원은 62年 5월 2일이었으므로 世人이 볼 수 있는 狀態에서 출원까지는 17일이 지났다는 것을 異議提起의 據거리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폴로리더는 當事者가 이를 窺知한다는 것은 稀有의 일이라고 猛駁하였으며 東京地法の 判決이 내리기까지는 3年이 걸렸다. 판결은 X圖와 Y圖의 형상이 類似하다는 結論이었으므로 폴로리더의 청구가 容認된 셈이다.

判決理由는 視覺上 가장 강하게 사람에게 印象이 남는 X圖 意匠이 모든 基本形態를 갖추고 있으므로 Y圖의 형상은 X圖의 의장과 유사하다고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캐년은 이 判決에 不服하여 東京高法에 抗訴하였는데 이유는 Y圖의 형상이 X圖의 의장에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75年 4월의 判定은 一審의 翻覆이었다. 즉 레버를 拳銃의 방아쇠를 操作하여 노즐에서 彈丸처럼 液體를 분사하여 分무기의 機能을 發揮하는 상태는 흔히 볼 수 있으나

1. X圖의 의장에서는 本體側面의 膨脹이 캠보다 적은데 反해 Y圖의 형상에서는 그 팽창이 캠의 外周徑보다 뛰어나와 있으며
2. 또 그 측면의 팽창이 X圖에서는 곧바로 下向하고 있는데 反해 Y圖에서는 表面이 두텁게 區劃되는 線條가 있고
3. 레버付着口의 配置가 다르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訟事는 푸로리더의 上告로 最高裁判所에서 審理中이다.

